

보수 규정

(제정) 2014.01.15. 규정 제07호
(일부개정) 2014.04.28. 규정 제19호
(일부개정) 2016.09.07. 규정 제40호
(일부개정) 2017.09.05. 규정 제52호
(일부개정) 2018.02.05. 규정 제60호
(일부개정) 2019.05.29. 규정 제67호
(일부개정) 2019.09.20. 규정 제72호
(일부개정) 2020.07.21. 규정 제84호
(일부개정) 2021.11.11. 규정 제105호
(일부개정) 2021.12.16. 규정 제110호
(일부개정) 2022.01.17. 규정 제117호
(일부개정) 2022.03.17. 규정 제122호
(일부개정) 2022.06.23. 규정 제126호
(일부개정) 2022.10.06. 규정 제130호
(일부개정) 2023.03.29. 규정 제138호
(일부개정) 2023.06.14. 규정 제144호
(일부개정) 2024.01.31. 규정 제149호
(일부개정) 2024.01.31. 규정 제155호
(일부개정) 2024.07.05. 규정 제157호
(일부개정) 2024.12.26. 규정 제16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김해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일반직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28.>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 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09.0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9.20., 2021.11.11.>

1. “보수”란 봉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대상 직원은 연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제4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 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봉급, 대우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가산금, 의료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장려수당,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특수직무수당, 특정업무수행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8. “통상시급”이라 함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제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은 익월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은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 제5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그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임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임용, 승진, 전직, 승급, 복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③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면직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일자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면직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징계처분 또는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고 있는 직원은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⑤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불구하고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 제6조(보수의 감액)** ① 「취업 규정」에 정하는 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 결근한 직원에게는 초과유계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과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무계 결근자의 결근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징계에 의한 보수의 감액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 ④ 징계에 의하여 제수당의 감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겸무시의 보수) 임직원이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 하나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①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의 보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 급여로 갈음한다.

②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연봉 급여자는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연봉 급여자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감액 지급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제11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①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면직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확정하여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06.14.]

제12조(비상시의 지급) 규정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직원 또는 가족이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으로 직원의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월보수액 범위 내에서 이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수지급 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봉 급

제14조(봉급) ① 직원의 봉급 기준표는 [별표 2]와 같이 하되, 봉급월액은 매년 김해시장이 정한다. 단, 선임직 본부장은 [별표2-1]을 따른다.<개정 2022.01.17.>

② 재단 대표이사의 보수는 [별표 2-1]의 보수·호봉 기준표를 기본으로 하되, 성과 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 매년 김해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09.07., 2020.07.21.>

③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규정 개정으로 봉급·수당 인상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보수 지급시 반영하고 복리후생비는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규정 개정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29.>

제15조(강임등의 봉급보전) 강임 또는 직종의 변경 등(이하 “강임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봉급 기준이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봉급이 강임 등의 사유발생 이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6조(초임호봉의 확정) ① 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확정하되, 타 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경력 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확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초임호봉 확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합산한다.

제17조(호봉 재확정) ① 직원이 재직 중 초임호봉 확정 방법변경 등 [별표 3]의 경력 환산표에 따라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호봉을 재확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확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합산의 경우 객관적 입증서류를 근거로 재산정하되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호봉을 재확정 발령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 기관 근무경력을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호봉승급기간 등) ①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관리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4]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한다.
- ③ 직원이 해당직급 호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 한다.

제19조(승급시기)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호봉승급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20조(호봉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09.20.>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된 자,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 기간
4.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및 9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

제4장 수 당

제21조(성과급) 임직원에게 대하여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김해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제21조의2(성과급 지급 제외대상) 비리 등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원비리, 비위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2.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3.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1개월은 30일로 계산)
4.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받은 자
6.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6.]

제21조의3(성과급 제외대상 기간) 성과급 제외대상 기간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6.]

제22조(대우수당) ①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봉급과 대우수당을 합한 금액이 차상위직 승진임용 시 봉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에 의하여 보수 감액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직원은 수당감액 비율에 따라서 대우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제23조(특수업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의2(업무대행수당)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직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24조(초과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초과(시간외, 휴일)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야간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5조(연차수당)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위험근무수당) 직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지급구분 및 [별표 7]의 등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가족수당)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임직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수당 지급범위·지급기준 및 방법을 내규로 정한다.

제28조(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 2022.10.06.>

제29조(정근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제30조(육아휴직급여) ① 직원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재단은 적극 협조한다.

②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삭제 <2019.09.20.>

④ 삭제 <2019.09.20.>

⑤ 삭제 <2019.09.20.>

[전문개정 2019.09.20.]

제30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대표이사, 본부장, 부서장에 대하여 [별표5]의 지급기준에 의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05.29., 2020.07.21., 2024.01.31.>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09.07]

제31조(기타수당) 제21조에서 제30조의2까지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고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7.21.>

제5장 복리후생 및 기타

제32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 임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협되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사항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건강진단) 임직원에게 대한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의료시설)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재단의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후생기구 및 시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내 식당 및 휴게소 등의 기타 후생복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복리후생비의 지급)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직책수행비

2. 직급보조비

3. 정액급식비
4. 명절휴가비
5. 기타 후생비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1]과 같으며,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강등 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복리후생비는 지급기준일에 근무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7조(기타후생비)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타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의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내규」에 따른다.

제38조(주택대여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택 또는 임대주택을 대여하거나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통근차량의 운행) 임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40조(피복의 지급) 임직원에게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2(업무상 재해자 휴업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 생계보조비로 산업재해보상 외 평균임금의 30퍼센트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02.05.]

제41조(재해보상)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제42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보상을 받게 되는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3조(보상의 예외)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직장체육진흥)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체육행사 등) ① 임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취미 모임을 육성발전 시킴에 적극 지원한다.

제6장 퇴직급여금

제46조(퇴직급여금) ① 만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요율에 의거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간에 지급된 봉급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를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연차수당과 상여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는 당해연도 지급 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성과수당은 전년도에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보다 적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47조(명예퇴직 수당) ① 재단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기준에 의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속 기간은 「인사관리 규정」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인사관리 규정」 제31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 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8조(조기 퇴직수당) 「인사관리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조기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퇴직당시 봉급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조기퇴직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05.29.>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부터 퇴직일까지 한다. 이 경우 정직처분기간,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하되, 재직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 월 단위 이상은 월할, 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3. 정원의 감축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퇴직하는 자와 사망으로 퇴직하는 자는 1년 미만의 잔여 개월에 대하여도 이를 1년으로 계산한다.

제50조(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① 임직원이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퇴직하거나 임

원이 성폭력,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산출된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개정 2023.06.14.>

② 임직원이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 기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 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09.07.>

제51조(퇴직급여금 지급) 퇴직급여금은 퇴직발령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52조(특별공로금) 삭제 <2019.05.29.>

제53조(퇴직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퇴직기금을 예치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수 담당자는 퇴직연금관리 금융기관에 연2회 이상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운영 상황을 개인에게 통지한다.

제54조(퇴직급여 총당금) ① 재단은 퇴직금 재원으로 필요한 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재단직원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해 연도 퇴직급여 추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 말일까지 퇴직급여 총당금으로 부담한다.

제55조(단수처리) 보수 계산 시 “10원” 단위까지만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56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07호 2014.01.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9호 2014.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승계에 따른 특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고용승계되는 직원의 경력, 임금, 인사, 근로계약 등의 사항은 고용승계 전 공단의 것을 승계하며 이를 이유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정 제40호 2016.09.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2호 2017.09.05.>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60호 2018.02.0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7호 2019.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직책수행비 및 관리업무수당은 2019. 01. 01.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 [별표2-1] 위촉직 보수·호봉기준표는 신규 임용 또는 재계약 대표이사(사무국장)부터 적용한다.(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위촉직) 보수 체계 표준화 방안 통보(기획예산담당과-3444(2019.03.15.)호에 의함)

부칙<규정 제72호 2019.09.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4호 2020.07.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05호 2021.11.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10호 2021.12.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17호 2022.01.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22호 2022.03.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26호 2022.06.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30호 2022.10.0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38호 2023.03.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44호 2023.06.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48호 2024.01.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5”는 2024.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55호 2024.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 1.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4. 1. 1.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충역·대체역 등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의 호봉 경력 인정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라 호봉을 재확정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확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호봉을 부여한다.

부칙<규정 제157호 2024.07.0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62호 2024.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6조, 제10조 관련)] <개정 2016.09.07., 2019.09.20. 2022.10.06.>

감액 지급 구분표

○ 감액수당 : 대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구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 (연봉월액의 70%)가 지급 되는 경우	봉급의 70% (연봉월액의 60%)가 지급 되는 경우	봉급의 50% (연봉월액의 40%)가 지급 되는 경우	봉급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20%	수당액의 30%	수당액의 50%	수당 전액

비고 : 대우 직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 직원이 될 때까지 대우수당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2 (제14조 관련)] <개정 2016.09.07.>

직원 봉급 기준표

직 급	봉 급	비 고
일반 3급 (계약직 나급)	일반직 공무원 5급과 동일 호봉상당	
일반 4급 (계약직 다급)	일반직 공무원 6급과 동일 호봉상당	
일반 5급	일반직 공무원 7급과 동일 호봉상당	
일반 6급 (계약직 라급)	일반직 공무원 8급과 동일 호봉상당	
일반 7급 (계약직 마급)	일반직 공무원 9급과 동일 호봉상당	
일반 8급	김해시에서 매년 산정한 호봉별 기본급	

[별표 2-1 (제14조 관련)] <개정 2019.05.29., 2020.07.21., 2022.01.17., 2022.06.23.>

선임직 보수 · 호봉기준표

직 위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대표이사	일반직 공무원 4급 20호봉
본 부 장	일반직 공무원 5급 20호봉

[별표 3 (제16조, 제17조 관련)] <개정 2018.02.05., 2020.07.21., 2021.11.11., 2024.04.24.>

경 력 환 산 표

경력별	구 분	환산율
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직으로 상근한(3개월 이상)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공무원, 업무직, 기간제로 상근한(3개월 이상) 경력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동종의 업무에 근무한 경력 	100%
을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한(3개월 이상) 경력 	80%
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비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공무원, 업무직, 기간제로 상근한(3개월 이상) 경력 	50%

※ 비고

1. 동일한 분야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력
-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 그와 상응하는 경력일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2.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예를 준용한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예를 준용한다.

4. 일반직, 공무원, 업무직, 기간제의 구분은 각 임용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삭제<2021.11.11.>

6. 삭제<2021.11.11.>

경력별	구 분	환산율
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직으로 상근한(3개월 이상)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공무원, 업무직, 기간제로 상근한(3개월 이상) 경력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동종의 업무에 근무한 경력 	100%
을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한(3개월 이상) 경력 	80%
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비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공무원, 업무직, 기간제로 상근한(3개월 이상) 경력 	50%

※ 비고

1. 동일한 분야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력
-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 그와 상응하는 경력일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2.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예를 준용한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예를 준용한다.

4. 일반직, 공무원, 업무직, 기간제의 구분은 각 임용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삭제<2021.11.11.>

6. 삭제<2021.11.11.>

[별표 4 (제18조 관련)]

승진 시 호봉 확정표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1	1	12	11	23	22
2	1	13	12	24	23
3	2	14	13	25	24
4	3	15	14	26	25
5	4	16	15	27	26
6	5	17	16	28	27
7	6	18	17	29	28
8	7	19	18	30	29
9	8	20	19	31	30
10	9	21	20	32	31
11	10	22	21		

[별표 5 (제4장 관련)] <개정 2014.04.28., 2016.09.07., 2017.09.05., 2018.02.05., 2019.09.20. 2022.10.06., 2023.03.29., 2024.01.31., 2024.04.24., 2024.07.05.>

수당 지급 기준표

구분	수당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고	
1.상여수당	①정근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②정근수당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상 : 월 10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6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50,000원 · 5년 미만 : 월 30,000원 <추가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연수 25년 이상 : 월 30,000원 · 근무연수 20년 이상 25년 미만 : 월 10,000원 	-	
	③ 대우수당	· 월 봉급액의 4.1%		
2.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 · 배우자 : 40,000원 ·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자녀 : 월 30,000원 - 둘째 자녀 : 월 7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 월 110,000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인당 월 20,000원 	·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 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3.특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①의료업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직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의: 월 850,000원 이하 - 일반의: 월 750,000원 이하 · 약무직렬: 월 70,000원 · 간호직렬 및 의료기사 : 월 50,000원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로 한다.
		②기술정보수당	가) 전기,기계,전산,조경,토목,건축,운전,조리의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 월 50,000원 이하 · 4,5급 : 월 30,000원 이하 ·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자 및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는 가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건축사 : 월 100,000원이하 - 기능장·기사 : 월 30,000원이하 - 산업기사 : 월 20,000원이하 - 운전업무종사자 중 일반5급 : 월10,000원 - 운전업무종사자 중 일반6급 이하 : 월20,000원
		③특수직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 하는 자 : 월 70,000원 · 청소년지도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 하는 자 : 월 70,000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월 30,000원 가산금 지급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월 30,000원 가산금 지급
		④장려수당	· 추모의공원 근무자 : 월 200,000원	※ 수골실 근무자 월 100,000원 가산금 지급

구분	수당명	지급율 및 지급액	비고
4.초과근무수당	①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시급×1.5×시간	-
	②휴일근무수당	• 통상시급×1.5×시간	-
5.성과급	성과급	• 매년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
6.관리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 월 봉급액의 9%	매월1일에 지급 한다
7.기타	①연차수당	• 통상시급×8시간×일수	-
	②특정업무수행경비	• 월 80,000원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경영평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담당자

※ 다만, 기술정보수당 받는 자 중 가)항목의 운전분야 및 나), 다)항목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특수업무수당 상호간에 병급 할 수 없다.

[별표 6 (제26조 관련)] <개정 2016.09.07.>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 별	월 지급액
일 등	50,000원
이 등	40,000원

[별표 7 (제26조 관련)] <개정 2016.09.07.>

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

등별 부문	을종	병종
각 부문	<p>(가) 폭발물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자</p> <p>(나) 고압력 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p> <p>(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p>	<p>(가)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 종사자</p> <p>(나) 저압동력, 그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p> <p>(다) 구급차의 운전원</p> <p>(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p> <p>(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을 위하여 연돌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자</p> <p>(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p> <p>(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및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자</p>

[별표 8 (제28조 관련)]<삭제 2022.10.06.>

[별표 9 (제46조 관련)]

퇴직급여 지급율표

기 준	지 급 율
근속년수 1년 이상	· 평균 보수월액×근속년수

[별표 10 (제47조 관련)] <개정 2019.05.29.>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

정년잔여 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년 이상 ~ 5년 이내인 사람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 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5년 초과 ~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frac{\text{정년잔여 월수}-60}{2}$)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위 지급기준 상의 “월 봉급액”은 보수규정 [별표 2] 상 기본급의 68%를 적용한다.

[별표 11 (제36조 관련)] <개정 2017.09.05., 2019.05.29., 2020.07.21., 2022.01.17., 2022.03.17., 2023.03.29., 2024.01.31.>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①직책 수행비	대표이사	월 400,000원		월정액으로 지급
	본 부 장	월 150,000원		
	3급 부서장	월 100,000원		
	4급 부서장	월 50,000원		
②직급 보조비	대표이사	월 400,000원		보수지급일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날
	본 부 장	월 250,000원		
	3급	월 250,000원		
	4급	월 185,000원		
	5급	월 180,000원		
	6 · 7급	월 175,000원		
③정액 급식비	공통	월 140,000원		보수지급일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날
	공통	지급기준일	지 급 액	
④명절 휴가비	공통	설 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금액×60%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금액×60%	